

제 89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0월 6일 상오 10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0월 6일 하오 1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2명
결석의원 김남진, 김창희, 정응표, 박두순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위교육장 조성덕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제 8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

◆ 부의안건

- 1) 단기 4281년 제 6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도 특별회계 (제 3회)
 - 도선 특별회계 (제 2회)
 - 공전 특별회계 (제 3회)
 - 국민주택 특별회계 (제 2회)
- 3) 단기 4291년 목포시 국민주택 건설자금 차입의 건
- 4)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조례) 제정안
- 5)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중 일부개정안
- 6) 목포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일부개정안

8. 토의사항

◎ 제8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서울방면 출장결과 보고

◇김 성 균 의원

- 김삼성 의장과 동도 서울방면 출장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음.

- 1) 중앙청 도시과장 : 오해를 풀었다.
- 2) 체신부 : 우체국청사문제
- 3) 해무청 : 대형준설선 관계

◇김 상 대 의원

- 부의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참고로 발언하는 바이나 금반 회기 중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이 상정안된 것이 의심스러운 일이다.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 행정전반에 긍(걸친)한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다.

◇김 삼 성 의장

- 사무장의 장기 결근으로 말미암아 교육청 내부가 상당히 어지러져 있는 거 같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인사문제 타합과 교육세법개정에 수반한 제반 사무 타합차 상도 중이오니 귀임시까지 보류함이 좋을 것 같다.

◇김 상 대 의원

- 금일 의회가 개최될 것을 알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책을 쓴 것으로 보아진다. 교육감 대리로 학무과장이라도 본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부의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서기 박 찬 대

- 부의안건 제 1항부터 6항까지 전 항목에 걸쳐 제안이유 설명하다.

◇이 정 권 의원

- 부의안건 전 항목을 해당상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음.

◇김 성 균 의원

- 집행행부 질의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질문

- 1) 제 1기호별세의 징수액과 그 율 및 제2기분의 자진 납부율을 발표하여 주기 바란다.
- 2)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한 감원의 필요성은 없는가
- 3) 임시직원은 몇 명쯤 유임시킬 것인가
- 4) 동정 특별회계의 추경이 없는 이유 및 동직원에 대한 증봉이 결정된다면 3개월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는가
- 5) 상수도 공사의 자체부담액 1천백만원의 확보는 자신이 있겠는가
- 6) 상수도공사의 예산 집행이 완전하였을 적에의 공정은 어느 정도 이겠는가
- 7) 나주 출신 정명섭 의원이 중앙당국에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
- 8) 계절로 보아 강우계(절)는 지났는데 현금 확보되어 있는 저수량이 몇 년 강우기까지는 대비할 수 있겠는가
- 9) 9월 30일 현재 도선 특별회계 손익계산을 발표하여 주기 바란다.
- 10) 사설 도선의 단속책 여하
- 11) 공익 전당포 차입금의 상환방도 및 증자대책 여하

◇강 영 락 의원

- 김성균 의원의 질문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안된 부분이 끼어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장의 출석동의를 채택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의장 김 삼 성

- 김의원의 질문중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을 답변토록 하면 해결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성 균 의원

- 시정전반에 공한 대집행부 질의를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명 남 철 의원

- 도선잔교시설비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목포측인지 용당측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한 감원 문제는 본청직원은 없습니다.
- 임시직원과 동직원은 증봉을 앓고 현봉 대로 12월까지 채용하기로 결정 지었습니다. 임시직원 시비부담 31명을 12월까지 증봉을 하게되면 1백19만원이 소요되고 동직원을 증봉시킬라면 3백12만원이 필요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호별세액 1기분의 징수율은 8할2분 (82%) 2기분은 5할4분(54%)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1) 국고보조액 완전소화 여부는 1억 2천 만환은 완전소화되는 것이나 나머지 9천만 환은 중앙의 형편상 삭감운운의 말이 있으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자체부담액 1천백 만환 확보는 자신이 있습니다.
- 3) 확장공사의 공정가능은 툰널(터널)공사가 40%이고 제 3 조절지 및 배수구가 완성될 것입니다.
- 4) 각수원지의 저수량은 시민의 용수절약에 대한 협조만 있다면 명년 강

우계(절)까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5) 도선 특별회계의 손익계산은 9월말 현재 15만환이 남았습니다.
- 6) 사설 도선 취체(단속)대책은 극력 주력하고 있습니다.
- 7) 잔교 시설비는 사실상 3백만환이 필요한 것이며 목포 측 잔교 수선이 시급한 것입니다.

◇하 시 장 답변

- 1) 상부의 방침은 임시직원은 감원하라는 명령이나 이렇게 되면 행정 능률상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믿어져 앞으로 3개월간의 일이나 상대방이 불평없이 이해만 하여준다면 현봉 그대로 채용할 예정이며 동직원 역시 중간에 세울인상이 불가능한 일이나 현봉 그대로 두었다가 명년도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액을 증봉하겠다고 각자 본인에게 이해를 구하여 두었습니다.

기채를 하여서라도 증봉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으나 그 상환방도가 막연한 것입니다.

- 2) 공익전당포 문제에 대하여도 사직당국에서는 법정 이율을 받도록 하는 바이나 이렇게되면 당시 공익전당포도 폐문 아니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나주천 용수인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로서는 기왕에 인수인가를 얻어 놓고 있으니 이제는 묵시 못할 단계로 보아져 의결부 측과 상의하여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본청 임시직원과 동직원은 현봉 그대로 지급한다함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생기게 된다. 기채를 하여서라도 증봉을 하여주어야만 한다.

◇김 상 대 의원

- 상수도공사비 중에서 9천만환의 보조금을 타처에 뺏길 우려가 있다한데 이에 대한 노력을 하여보았던가 그 이유 여하

◇건설과장 이 춘 흠

- 9천여 만환 삭감문제는 대통령각하 분부대로 서울특별시에 5억환을 더준다는데서 기인된 것 같으나 우리는 이를 안뺏길려고 극력 노력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 상 태 의원

- 동직원과 임시직원의 증봉을 조건으로 금반 상정된 추경예산 일체를 비
트할 것을 개외하다

◇이 정 권 의원

- 동직원의 증봉을 모색하는 것보다 동장 유급제를 복구시키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보아지는 것이며 집행부 측의 답변과 같아 확고한 재원이 안서있
는 증봉을 여하히 하라는 말이며 기채를 하여도 상환방도가 막연하다면 어
떻게 할것인가

◇김 상 대 의원

- 개의(김상대 의원)에 찬성 발언하다.

◇강 영 락 의원

- 본 청 임시직원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애석하지만 해직처분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처우개선의 근본 취지를 재음미하여 동직원은 어떠한 방도를
강구하여서라도 반액정도라도 증봉하여 주어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성 균 의원

- 이정권 의원의 발언은 동특에서 기채하자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2억5천만원의 거대한 예산이니 적당한 항목에서 조금씩 할애
하여 짜불대로 그 예산을 짜보라는 말이며 그렇지도 못한다면 기채를 하여
서라도 증봉하여 주어야 된다는 말이다.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찬성파의 발언이나 반대파간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지나 집
행부 측에서 사전에 예산편성 타합회 같은 것이라도 있었다라면 여사한 일
이 안생겼을 것으로 보아지며 결론으로는 현 동직원을 감원시켜 그 증봉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참고로 말하나 동직원의 감원은 행정 운영동을 폐합시켜 그 수를 주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동폐합의 원칙을 수립하여 금월 중으로 경히 (변경하여) 추경안을 수립 그 증봉 예산을 제안할 것을 조건부로 이정권 의원의 동의대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상태 의원의 개의를 철회되고 이정권 의원의 동의를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우리 목포시의 행정 운영동은 23개동이 너무 많은 감이 있는 것이다. 소정법규에 규정된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될 문제라고 보아지니 당 의회의 결의로서 15,6개동으로 개편도록 할 것을 제의원이 찬성하신다면 동의 하겠다.

◇김 경 인 의원

- 자연동을 폐합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나 공익단체의 행정운영동 폐합은 그 자치단체의 의결만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보아진다. 집행부측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주기 바란다.

◇집행부 측 답변

- 김경인 의원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한국일보 최중우 기자는 현금 야기되고 있는 중국전란에 종군 중 불행하게도 조난당 하였다는 보도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의 의결로써 한국일보에 조전을 발송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대 교육위원회 질의 개시

◇김 상 대 의원

- 1) 북교국민학교 홍교사가 박장열이라는 아동을 실신 상태에 이르게 까지 구타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이의 진상여하
- 2) 시내 5개 국민학교에서 9월분까지의 사친회비를 안냈다하여 퇴교시킨 상황을 발표하여 주기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유달 국민학교 실습지 526평을 김순규 교장으로부터 박세문 교장 명의로 변경시키고 이를 금반 동교사친회의 결의로써 박종호 명의로 변경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질문

- 1) 사친회비 면제는 9월분부터 적용되리라고 알고 있는데 9월분을 징수하고 있는 이유여하
- 2) 유달 국민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사친회장 개인명함을 교원들로 하여금 가지고 다니게 하여 학부형에게 금품을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을 아는가

◇조 학무장관 답변

- 1) 북교 국민학교 아동구타사건에 대하여는 지도책임자로서 심심한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당해 선생은 11개년간이나 동일교에 근무하고 있는 우량 교원으로서 표창까지 받은 착실한 직원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조사를 못하고 있으나 본인은 그 비위를 철저히 후회하고 있으며 어떠한 꾸지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사친회비 징수문제는 서무과 소관입니다.
- 3) 유달교 실습지문제도 서무과 소관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경위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생략)
- 4) 유달 국민학교 교원들이 학부형을 상대로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나 꼭 그 진상을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상수도공사의 나주 측 반대 운동을 동 군출신 정명섭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의회에서도 2, 3인의 대표단을 상경시켜 이에 대비토록 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김 성 균, 김 상 대 의원

- 찬성 발언하다.

◇하 시장

- 본인도 동감입니다.

- 이제는 우리가 운동을 전개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폐의를 선언하다.

(하오 1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0월 7일

시의원 김 상 태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주 도 식

제 89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0월 8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0월 8일 하오 1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박두순, 김창희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각 분과위원회 회의상황보고 (내무위종합 심의)

◆ 부의사항

-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내무위원회 종합 심의 보고

◇정 응 표 의원보고

- 부의 안건 제2항부터 제 6항까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무수정 통과를 보았으나 단기 4291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관)사회사업비(항) 사회사업제비 (목) 보조금 및 교

부금 750,000환 증액중 상선 고등학교에 보조할 600,000환을 삭감하여 내무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안대로 통과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본 청 임시직원과 동직원의 봉급도 재원이 없어 증봉을 못하는 처지 인데 국립학교에 보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며 차기 회의시 어떠한 묘안이 나오도록까지 삭감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부의 안건 상정)

◎ 단기 4291년도 제6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 응 표 의원

- 시청직원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보건데 그 생활면에 있어서도 월봉 만으로서는 도저히 생활영위를 못하리라고 보아지나 이로써 살고 있는 것을 기적의 것이다. 그 생활수준도 각각구구 하리라고 느껴지나 중식 시간에 도시락지참이 없어 외식을 하는 폐단도 있으려니와 중식시간려행을 아니한 관계로 오후 1시경에 시민이 이 용무를 보러오면 태반이 자기 자리에 없는 현상이다. 금반 증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전청원에게 도시락지참을 려행시킬 용의는 없는가

◇김 일 섭 의원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회부안대로 무수정통과할 것을 동의한다.

◇김 성 균 의원

- 금반 사석에서 총무과장의 언질에 의하면 동직원과 임시직원에 대하여도 반액정도라도 증봉하도록 세입포착에 노력하여 차기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를 조건부로 김일섭 의원의 동의에 재청한다. 이어서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1) 수도특별회계 (제 3회)
- 2) 도선특별회계 (제 2회)
- 3)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제 3회)
- 4) 국민주택 특별회계 (제 2회)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국민주택건설자금 차입안

◇김 상 대 의원

- 전기 5건 일괄하여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조례) 제정안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안

◎ 목포시 수도료 징수조건중 개정안

◇김 성 균 의원

- 3건 공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무수정 통과를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 목포시 의회 회의규칙 조례는 이미 통과되었으나 그 명칭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라고 느껴지나 규칙으로 있을 적에는 부칙말미에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바뀌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규칙이라 함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나 조례는 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대외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 시장 답변

- 정응표 의원이 발언하신 중식의 도시락 지참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청직원은 호적계 직원을 제외하고는 거개 외근이 주로되어 있는 것이며 일부내 직원에 대하여도 본인의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락 지참으로 인한 낭비 등을 우려하여 정오로부터 1시까지의 사이에 각자 중식을 맞치고 귀청하도록 누차 엄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중식시간에 음식점 출입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외는 삼가도록 극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기는 종전같이 민폐를 끼치는 사례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교육청상대 질의 동의에 재청에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질의

- 1) 교육세법개정이라 사친회비 면제로 수반한 각 국민학교 운영에 비명을 울리고 있는데 타교육위원회에서는 추경통과로 착착 안착된 집무를 한다고 보아지며 시본청만 하드라도 제 2기분호별세가 60% 징수에 육박하였다고 드러진는데 교육위원회에는 제2기분을 어느 때 부과하여 징수할 것인지 답변 하여주기 바란다.
- 2) 정 사무장은 중앙에 출장간 이후 귀임않고 귀향하였다는데 저반에 광주에서 돌아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다. 아직 귀청않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병가 혹은 년가의 수속절차도 안밝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상 태 의원 질의

- 유달학교 실습지 526평을 박교육감이 동교 교장에게 인계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를 박종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김 성 균 의원 질의

- 1) 사친회비가 면제된 후 각 국민학교에 기만환씩이라도 배부한 일이 있는가
- 2) 4개월분 보건수당을 지급하였는가
- 3) 각 국민학교 아동의 월동대책은 서있는가

◇교육감 박 세 문 답변

- 금반 상도 목적은 교육세법개정에 수반한 제사무 타합과 인사문제를 타

합하기위한 용무였습니다.

1) 교육세 제2기 부과징수 문제는 저반에 재무부안의 시행세척이 와있었으나 이번에는 또다른 문교부안이 나와 확정을 못짓고 있으나 예산안도 방금 작성 중이오니 교육위원회를 경유하여 불일중 제안하겠습니다.

2) 정사무장은 신경통으로 와병중이라고 하며 아마 불원 경질될 것 같습니다.

3) 유달학교 실습지 문제는 본인이 동교 교장 부임당시 귀속농지로서 상환량 9석7두이 미납된 것을 사친회에서 상환하여 왔으며 이것을 사친회에 인계한 것도 사실이나 그 후 매도하여 동교 온실 수축비에 썼다한다. 자세한 것은 동교 교장이 출석하였으니 답변토록 하겠다.

4) 보건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5) 아동월동 대책은 금반의 추경목적을 수용비에 치중하였으니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려 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함은 전교실 난방장치는 어려운 일입니다.

◇김 상 태 의원

- 학교 재정을 사친회에 인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친회에서 논의할 성질이 되겠는가

◇박 교육감

- 미납된 상환량 등을 사친회비에서 납부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사친회비를 10월분부터냐 9월분부터 면제하느냐의 문제는 전국적인 일이니 양해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의회에서 교육감에게 질의한 사항을 국민학교장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각 국민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감의 임무일 것이니 국민학교장에게는 그 답변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사친회비는 9월분부터 면제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유는 조세의무자로부터 9월분부터 적용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상 태 의원

- 사친회장명의로 각학부형을 A,B,C급으로 분류하여 선생을 시켜 금품을 강요한다든가 학교 재산을 정당한 수속없이 매도 공모한 교육감, 교장, 등은 교육계로부터 추방하여야 된다.

◇김 성 균 의원

- 2개월간에 공하여 사무장의 무계결근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은 공백상태에 함입 하였으니 교육감은 하루속히 사무장을 처단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1) 교육청 사무장의 장기 결근에 의사의 진단서도 없이 병가원이 수리되어 결재가 났음은 유감이며 중요한 용무를 띠고 중앙에 출장한채 상사에 복명도 없이 결근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하여 당 시의회의 결의로써 당국에 파면 결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교육감은 신설학교의 건축에 자신이 있는가
- 3) 사친회비가 면제된 후의 대책은 여하히 수립하고 있는가
- 4) 현재까지의 부채액 상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명 남 철 의원 질의

- 1) 유달학교 사친회에서 금품을 징수하였다는 발언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이니 이 이상 언급 안토록하여 주었으면 쓰겠다
- 2) 실습지를 박종호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불법이다 그 경위를 말하여 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그 토지 문제에 대하여는 비위사실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조사단 구성을 동의한다.

◇의장 김 삼 성

- 우리 의회로서는 사친회 재산을 터치할(간섭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 정 권 의원

- 그 재산에 대하여는 조성덕 학무과장이 해명한 바도 있거니와 상환은 사친회에서 해왔다하지만 형식적 연고권은 학교 자체일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1) 김의장의 말과 같이 만약 그 토지가 사친회의 재산이라면 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데 찬동한다.
- 2) 그리고 각 학교에 사친회비는 없다 하더라도 사친회는 존속하리라고 보아지는데 이번 유달학교에서 ABC급으로 분류하여 교직원을 시켜 금품을 징수하는 졸렬한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게된 것이다. 이를 징수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아닐 것이고 야구단원정을 위한 일이니 이 이상 확대 양기를 바라는 바이다.
- 3) 정 사무장의 파면건의를 하자는 동의까지 나왔으나 1천여만원의 부채가 있다하여 사무인수도 앓고 있다하니 어떠한 애로가 개제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아는대로 해명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유달학교 실습지를 김영안씨명의로 이전토록 승낙서가 되어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박종호 명의로 이전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과장의 답변을 요망한다.

◇김 성 균 의원

- 사친회 재산을 의회에서 타지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나 어느 것이 사친회 재산이고 어느 것이 아니라는 귀결을 짓고 논의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반 당 의회에서 서부학교 교장관사인 사친회 재산을 취득과 처분결의까지 하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 권 의원

- 정응표 의원으로부터 박종호 명의로 이전하여준 경위를 산업과장에게 질문하였으나 취급자의 말을 들으면 김영완씨가 와서 2중, 3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취득자인 박종호씨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탁이있어 그리

되었다한다.

◇의장 김 삼 성

- 강영락 의원의 조사단 구성 동의의 표결을 선언하고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조사위원으로 김상태, 강영락, 김성균 의원을 지명하다.

◇김 일 섭 의원

-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 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교육감 박 세 문

- 정사무장의 장기결근 이유는 신병도 있으려니와 전임지인 순천에서 모종 사건이 있어 늦어진 모양이나 조속한 시일내 가부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저번 회기중 김기봉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를 본 의원등의 소개로써 청원요지대로 채결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요청서를 회부한 것 같은데 우금 하등의 반응이 없으니 여하한 이유인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박 교육감 답변

- 본 건 결재를 한 기억도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사무장의 사무인수는 완료하였습니다. 9월분 사친회비 징수문제는 이에 대한 공문이 9월 29일에야 접수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니 이해 하여주기 바랍니다.

◇김 성 균 의원

- 현 사범 학교 내에 김영완씨가 건축한 계사와 돈사가 있는데 그 당시 학교와 대차당시 김시측에서 필요 없으면 학교에 기부할 것을 조건부로 부지를 빌린 것 같다.

요즘 그 대지를 김영완시 명의로 이전 운동을 한다는데 교육감은 여하히 생

각하는가

◇박 교육감

-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재산을 본인단독으로 어떻게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낭설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교육청에서는 체납세금의 차압반을 징수계직원을 총동원하여 빈동인 변방동을 독려한 실정인데 빈부동의 체납율이 동일인 경우 어떠한 이유로 부동을 제외해놓고 빈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모납세의무자는 납기내에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다하여 체납자라 협박한 직원을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박 교육감 답변

- 징수계 직원이 총동원하여 다닌다는 것은 각 동별로 계획일정을 만들어 1개동씩 정리하기 위하여 수개반으로 편성 독려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교 3구를 독려할 당시는 이정권 의원이 현장에 오시여 호통을 치는 바람에 직원들이 위축 되었다는 복명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사소한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엄단을 내리겠습니까 이해하여주기 바랍니다.

◇이 정 권 의원

- 박교육감의 말은 본 의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같은 감을 주었으나 그것이 아니고 죽교 3구 동사무소내에서 징수계장 상대로 교육감에게 질문한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였을 따름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하오 1시 1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함.

단기 4291년 10월 9일

시의원 김경인

시의원 조양순

작성자 서기 주도식